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종무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312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2년 03월 10일
발 의 자: 김종무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대호, 김정태, 김태수,
김혜련, 김희걸, 박기열,
박상구, 박순규, 송아량,
이영실, 이정인, 임종국,
장상기, 전병주, 전석기,
홍성룡, 황규복 의원(17
명)

1. 제안이유

-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여,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, 법정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도록 함(제50조제3항 신설).
- 나.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자가 통합심의를 거쳐 법정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, 법정상한용적률 초과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에게 공급하도록 함(제50조제4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및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 제목 “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)”를 “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”로 한다.

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“은 100분의 40으로 한다.
- 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“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 적률 완화) ①·②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 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"시 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 분의 40으로 한다.</p> <p>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"시 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 분의 30으로 한다.</p>